



-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1.



이영빈 의원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이영빈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열악해진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권리증진 및 보호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서는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의료법」 제3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간호인력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간호인력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월 20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923005
------------	----------

발의일자: 2023. 01. 20.

발의자: 이영빈, 황국주, 박종길,
김정희, 박정환, 임미연,
남현주, 장호섭

1.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열악해진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권리증진 및 보호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나.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 다.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구청장은 「의료법」 제3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간호인력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간호인력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의료법」 제7조, 제36조 및 제80조
-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인력의 권리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 “간호인력”이란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간호인력 권리증진 및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간호인력 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간호인력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점검)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 제36조의 각 호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간호인력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2. 간호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3.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간호인력에 대한 구제 및 심리상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협력)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4.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③~⑤ <생략>